

## 01

2023 서울 7급 지방재정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지방자치단체 전체 재정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분한다.
- ㄴ.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은 동일 회계 또는 기금으로만 구성한다.
- ㄷ. 행정운영경비는 기준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분한다.
- ㄹ. 재정보전적 이전재원, 채무상환 등에 해당하는 영역은 총계관리 및 사업관리 방식의 차별화를 위해 재무활동(비사업)으로 설정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해설

- ㄱ. (O) 지방정부의 전체 재정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분합니다.
- ㄴ. (X) 정책사업이란 재정사업과 업무를 대상으로 부서의 성과목표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을 의미합니다. 정책사업은 다수의 회계와 기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위사업은 정책사업을 세분한 실행단위로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근거입니다. 정책사업과 달리 1개의 단위사업은 동일 회계 및 기금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 ㄷ. (O) 행정운영경비는 지방정부의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분됩니다.
- ㄹ. (O)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로 구분합니다. 내부거래지출에는 공기업 자본 및 경상전출금, 기관 내의 회계 간 전출입금, 기금전출금 등이 있으며, 보전지출에는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예치금, 반환금 등이 포함됩니다.

정답 ③

## 02

2023 서울 7급 지방재정론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 ① (O)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항
- ② (X)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습니다.
- ③ (O) 「지방재정법」 제60조
- ④ (O) 「지방재정법」 제39조 제4항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정답 ②

### 03

2023 서울 7급 지방재정론

오츠(W.E.Oates)의 분권화 정리를 따를 때 지방정부가 중앙 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 주민들은 큰 제약 없이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 ㉡ 특정 공공재의 소비가 지리적으로 전체 인구 중의 일부 주민에만 한정된다.
- ㉢ 각 구역에서 소비될 공공재의 공급비용이 중앙정부와 해당 지방정부에서 동일하다.
- ㉣ 주민들은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정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해설**

오츠의 분권화 정리는 어떤 (지방)공공재의 중앙공급으로 인한 비용절감 및 지역 간 외부성이 없다면, 사회적 후생은 지방정부가 각 지역별로 파레토 효율적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할 경우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에 걸쳐 획일적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할 때보다도 지방정부가 공급할 때 최소한 같거나 더 높다는 이론입니다. ㉡. 특정 공공재의 소비가 지리적으로 전체 인구 중의 일부 주민에만 한정된다 (지역 간 외부성이 없음)는 것과 ㉢. 각 구역에서 소비될 공공재의 공급비용이 중앙정부와 해당 지방정부에서 동일하다는 것(비용절감 없음)이 오츠의 분권화 정리를 따를 때 지방정부가 중앙정보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정답** ③

### 04

2023 서울 7급 지방재정론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한 경우
- ②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③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경우
- ④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낮고 이·불용액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계획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해설**

- ④ (X)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낮고 이·불용액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계획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재정진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 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이하 "재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경우
-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한 경우
- 3.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4. 그 밖에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정답** ④

05

2023 서울 7급 지방재정론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재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총계기준 산출방식이 적용된다.
- ㄴ. 지방정부의 통합재정은 2005년부터 작성되었고 2013년부터는 통합재정 기준의 통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가 적성되어 발표되고 있다.
- ㄷ. 실질적인 통합재정통계 산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교육재정을 통계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 ㄹ. 지방재정의 지역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세입과 세출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해 작성하며, 보전재원, 통합재정수지 등의 자료를 제시해 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해설

- ㄱ. (X) 통합재정은 순계기준으로 작성됩니다.
- ㄷ. (X) 지방 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회계로 일반회계, 기타·공기업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전체 순수 재정활동이 포함됩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은 통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답 ③

06

2023 서울 7급 지방재정론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개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 ②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하며,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 ③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 ④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 ① (O)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
- ② (O) 「지방교부세법」 제8조
- ③ (O) 「지방교부세법」 제5조 제2항
- ④ (X)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지방교부세법」 제5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해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정답 ④

## 07

2023 서울 7급 지방재정론

「지방회계법」상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결산 개요
- ㄴ. 재무제표
- ㄷ. 계속비 결산 명세서
- ㄹ. 지방채 발행 보고서
- ㅁ. 성과보고서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ㄷ, ㄹ, ㅁ

### 해설

「지방회계법」 제17조에 따르면 결산서의 첨부서류는 ㄷ. 계속비 결산 명세서, ㄹ. 지방채 발행 보고서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 명세서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정답 ③

## 08

2023 서울 7급 지방재정론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둔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해설

- ① (X) 일부가 아닌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② (O)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1항
- ③ (X) 시·도지사가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④ (X) 다음 회계연도가 아닌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정답 ②

09

2023 서울 7급 지방재정론

「지방재정법」상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합의 보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발행주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해설

- ㉠. (O)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
- ㉡. (O) 「지방재정법」 제11조 제4항
- ㉢. (X) 교육감은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 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100분의 60 X)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 (X)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합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①

10

2023 서울 7급 지방재정론

지방재정법령상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는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특수공시 사항이다.
- ③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은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통공시 사항이다.
- ④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설

- ① (O) 「지방재정법」 제60조 제1항
- ② (X)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는 일반공시 사항입니다.
- ③ (O)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 ④ (O)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1.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2. 법 제6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3.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4.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5.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정답 ②

## 11

2023 서울 7급 지방재정론

###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를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설

- ① (X)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습니다(법인 기부 불가).
- ② (O)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 ③ (O)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 ④ (O)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3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현금
-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①

## 12

2023 서울 7급 지방재정론

### <보기>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 <보기>

- (가)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가장 많다.
- (나)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대체로 규모는 크나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세입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가) (나)

- ①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 ②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 ③ 재산매각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 ④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 해설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하고, 이자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해당합니다.

정답 ④

13

2023 서울 7급 지방재정론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의 모니터링 지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통합유동부채 비율
- ②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 ③ 예산대비 채무 비율
- ④ 채무상환비 비율

해설

① (X) 통합유동부채 비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에 따른 모니터링 지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재정진단) ② 법 제55조 제3항 제2호에서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2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 4. 지방세 징수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답 ①

14

2023 서울 7급 지방재정론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② 예산 편성 시 순계 작성을 권장하고 있다.
- ③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예외로 처리할 수 있다.

해설

② (X)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은 지방세입과 지방세출의 모든 내용이 총체적으로 계상된 상태에서 지방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세입이나 지방세출의 모든 내용이 아닌 상채된 순수 결과만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순계 작성을 권장 X).

①, ③, ④ (O) 「지방재정법」 제34조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정답 ②

15

2023 서울 7급 지방재정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 사업 유형 중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하수도사업
- ② 자동차운송사업
- ③ 체육시설업
- ④ 토지개발사업

**해설**

- ①, ②, ④ (O) 하수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토지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공기업 대상사업(당연적용사업)입니다.
- ③ (X)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건축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정답** ③

16

2023 서울 7급 지방재정론

자치구의 세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재산세
- ② 등록면허세
- ③ 조정교부금
- ④ 보통교부세

**해설**

- ①, ② (O)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입이다.
- ③ (O)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세입입니다.
- ④ (X) 보통교부세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합니다.

「지방교부세법」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정답** ④



17

2023 서울 7급 지방재정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 ②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한다.
- ③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한다.
- ④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는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한다.

해설

- ① (O)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제1항
- ② (O)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2 제1항
- ③ (X) 100의 30이 아닌 100분의 60입니다.
- ④ (O)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2 제1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제5조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정답 ③

18

2023 서울 7급 지방재정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계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용자관리계정
- ② 재정지원계정
- ③ 전환사업보전계정
- ④ 지역자율계정

해설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 수도권의 지방정부는 다수의 재정확충을 도모할 수 있으나, 비수도권의 지방정부는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역발전상생기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정부가 일정부분을 출연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도입하여 비수도권 지방정부와 재원을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 용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구분합니다(지역자율계정 X). 재정지원계정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수입금 중 재정지원계정의 수입금, 용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용자관리계정은 예치받은 자금, 지방채 발행 수입 및 일시차입금, 지방정부의 출연금, 지방정부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발전기금의 운영수익 등을 재원으로 합니다.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은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21 중 10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정답 ④

## 19

2023 서울 7급 지방재정론

「지방교부세법」상 특별교부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 ②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 ③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교부할 수 없다.

**해설**

- ① (X) 100분의 20이 아닌 100분의 40입니다.
- ② (O)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1항
- ③ (O)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1항
- ④ (O)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6항

「지방교부세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

**정답** ①

## 20

2023 서울 7급 지방재정론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액, 50%
- ② 레저세: 레저세액, 40%
- ③ 자동차세: 자동차세액, 30%
- ④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20%

**해설**

- ① (X)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입니다.

「지방세법」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3.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4.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정답** ①